

서울특별시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운영사무의
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30
----------	-----

2012년 6월 22일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6월 8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2년 6월 1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
보건복지위원회(2012년 6월 2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)

- 가.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
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긴급전
화센터로서,
- 나.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
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
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

동의를 받고자 함

다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3. 1. 1 ~ 2015.12.31)
- 위탁업무
 - 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
 - 경찰, 의료기관, 가정·성폭력상담소, 보호시설 등 관련기관·시설연계
 -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
- 소요예산 : 328,952천원 (201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(1) 동의안 제출 배경

- ‘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’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6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긴급전화센터로서, 위탁유형은 ‘사무위탁’이며, 위탁기간(‘11. 1. 1 ~ ’12. 12. 31) 2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, 향후에도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(2) 민간위탁 필요성 및 지속성에 대한 검토

- ‘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’는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 긴급전화로써,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

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전화상담,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, 긴급보호를 실시하며, 전문상담기관, 보호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기관, 검·경찰,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원스톱(ONE-STOP) 보호망임.

- 여성긴급전화 서비스는 파편적이고 일회적인 서비스가 아닌, 여성긴급전화를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담자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봄.
-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6,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등에 의함.
- 여성긴급전화의 이용자는 보통 복합적 문제를 지니고, 가정폭력 성폭력, 가족문제, 이혼, 등 다양한 문제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으며, 여성긴급전화의 내담자들은 취약계층 사람들만 아니라 이 사회의 일반적인 여성들이므로, 여성긴급전화 이용자들은 총체적 문제에 개입할 전문적이고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함.
- 따라서 시가 직영하는 것 보다, 수년간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비영리법인의 전문적인 상담·지원서비스와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,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5. 토론요지 : 없음.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7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83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6월 8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긴급전화센터로서,
-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개요

- 센터명 :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
- 위탁유형 : 사무위탁
- 위탁법인 : 사단법인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(대표 : 정태기)
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77-18
- 근거법령 :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
- 이용대상 :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·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3. 1. 1 ~ 2015.12.31)
- 위탁업무
 - 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
 - 경찰, 의료기관, 가정·성폭력상담소, 보호시설 등 관련기관·시설연계
 -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
- 소요예산 : 328,952천원 (201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6
 - 지방자치법 제 104조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 - 201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(여성가족부)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- 1차 : 1998.1.1 ~ 2001.7.15 서울여성의전화 운영
 - 2차 : 2001.7.16~2003.7.15 서울여성의전화 운영
 - ※ 2002.12.17 서울여성의전화 중도 약정해지
 - 3차 : 2003.1.1~2005.12.31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운영
 - 4차 : 2006.1.1~2008.12.31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
 - 5차 : 2009.1.1~2010.12.31 사단법인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(현)
 - 6차 : 2011.1.1~2012.12.31 사단법인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(현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市 직영시 근무연한 등 동일조건의 인력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,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서비스 질 하락이 예견되며,
- 또한,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4조의6
 -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 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